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0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 : 윤영석 · 윤창현 · 강기윤

윤두현 · 김태호 · 박덕흠

이종배 • 권명호 • 홍준표

조명희 · 최형두 · 배현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음 규제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19. 12. 27. 2018헌마730).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

별 및 장소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5항 및 제256조제5항제9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79조 및 제216조제1항에 따른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 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시간대별 및 장소별 소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6조제5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91조제5항을 위반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① ~ ④ (생 략)	사용제한) ① ~ ④ (현행과 같
	승)
<u><신 설></u>	⑤ 제79조 및 제216조제1항에
	<u>따른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u>
	<u>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u>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및 장소별 소음기준을 준수하
	<u>여야 한다.</u>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徵	
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제91조제5항을 위반하여
	<u>확성장치·휴대용</u> 확성장치·녹
	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u>자</u>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